

2023. 10. 23(월). 10:00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출연안은 2023년 10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2024년도 남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사업명

- 2024년 경기도 농업발전계정 출연 : 50백만원

### □ 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
-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 출연금 개요

#### ○ 현황

- 현재까지 우리시 출연금액 : 2,166백만원(1989~2023)
- '24년도 출연금액 : 50백만원

- 시군 출연금 배정 : 도농복합시(16개) 50백만원 / 일반시(15개) 10백만원
- '23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계정 사업규모 : 49,100백만원
- '23년도 우리시 배정액/추진실적 : 600백만원/130백만원

#### □ 경기도 농업발전계정 지원 분야

#####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사업대상 :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 : 100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 농지 구입, 시설현대화 등 기반 조성 자금

##### ○ 농어업경영자금

-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연리 1.0%,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농업인(6천만원), 농업법인(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일반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5. 검토의견

- 우리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현재까지 21억6천6백만원이며, 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2024년도 출연금은 5천만원으로,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기금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8일

전문위원 윤선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